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58

발의연월일: 2024. 7. 31.

발 의 자:김위상·김선교·박준태

서일준 • 권성동 • 임이자

우재준 • 서범수 • 박정하

성일종 · 구자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4월에 확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에서 2030 년까지 무공해자동차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현행 법령 은 제1종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나 배출허용기준을 실 질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무공해자동차 정의 규정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미국과 유럽연합은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유효수명 내구 등 무공해자동차의 환경성능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련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있는데, 주행거리 감소, 배터리 성능저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과 연관된 주요 환경성능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외 온실가스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무공해자동차 제작시 환경성능과 성능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인증받도록 하여 성능

이 낮은 무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가목, 제46조제5항·제6항 및 제48조제2항 신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

제4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무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1회충전 주행거리 등 환경성능(이하 "무공해자동차 환경성능"이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무공해자동차성능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무공해자동차 환경성능의 종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 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

- 4항) 중 "제2항 단서"를 "제3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 ② 제46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무공해자동차 환경성능이 무공해자동차 성능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이하 "무공해 자동차 환경성능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의2제3항제4호 중 "제48조제6항"을 "제48조제7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호 중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또는 무 공해자동차 성능기준"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제48조제1항"을 "제4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제48조제1항"을 "제4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58조의2제2항 중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의"를 "무공해자동차의"로 한다.

제91조제4호의2 중 "제48조제2항"을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제48조제3항"을 "제4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48조제5항"을 "제48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의2. (생략) 1. ~ 15의2. (현행과 같음)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16.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 없는 자동차 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 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 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 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 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 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 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16의2. ~ 23. (생략) 16의2. ~ 23. (현행과 같음)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 ④ (생 략)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무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제작하 <u><신</u>설>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생 략)

<신 설>

② 자동차제작자가 <u>제1항</u>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 려는 자동차제작자는 1회충전 주행거리 등 환경성능(이하 "무공해자동차 환경성능"이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무공해자동차 성능 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 작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무공해자동차 환경성능의 종류는 환경부령으 로 정한다.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6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무공해자동차 환경성능이 무공해자동차 성능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이하 "무공해자동차 환경성능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있다.

<u>3</u>		 	 ·- <u>제</u>]	[항	및
제2호	하	 	 		

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변경인 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요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로서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생략)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할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에 인증・변경인증・변경보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u>제5항</u>까지의 규 정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⑤</u> <u>제3항 단서</u>
,
<u>⑥</u> <u>제4항</u>
<u>⑦</u> <u>제6항</u>

요한	시	험의	방	법 •	절치	計,	시	험
수수	忌,	인증	방밭], Ę	변경]	보고	<u>L</u> ,	인
증의	면	제•	생략	: 및	인.	증	丑	시
방법여	케	관하	여	필요	오한	사	항	은
환경	부랑	<u></u> 으로	. 정	하디	7.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 ① · ② (생 략)
- ③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인증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3. (생략)
- 4. <u>제48조제6항</u>에 따른 인증시 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④ (생 략)

- 제55조(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 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u>제작차</u>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	의 대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 ,, ,,
3	
1. ~ 3. (현행과 같음))
4. 제48조제7항	
	-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인증의 취소)	
1. (현행과 같음)	
2	
	<u>제작차</u>
배출허용기준 또는	무공해자

는 경우

3. • 4. (생략)

제56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 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 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 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 <u>제48조제1항</u>을 위반하여 인 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 2. (생략)
- 3. <u>제48조제1항</u>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u>제2항</u>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③ (생 략)

<u> 동자 성능기순</u>
3. • 4. (현행과 같음)
제56조(과징금 처분) ①
1. <u>제48조제1항 및 제2항</u>
2. (현행과 같음)
3. <u>제48조제1항 및 제2항</u>
<u>제3항</u>
②・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②무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u> 의</u>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	
동차"라 한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	
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	
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	
한 목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	
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91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u>제48조제2항</u> 에 따른 변경	4의2. <u>제48조제3항</u>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변경인증을 받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의3. ~ 13. (생 략)	4의3. ~ 13.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94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u>제48조제3항</u>에 따른 변경보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변경보고를 한 자
- 1의2. <u>제48조제5항</u>을 위반하여 인증·변경인증·변경보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 3. (생 략)

② ~ ⑥ (생 략)

<u>.</u>
1. <u>제48조제4항</u>
1의2. <u>제48조제6항</u>
1의3.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